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 산 광 역 시 장

2020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훈령 제1508호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정비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시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전 컨설팅감사”란 제3조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기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

(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2. 구·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 ①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이용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거나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행정심판 또는 감사가 진행 중 이거나 확정된 경우
 5.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경우
 7.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사전 컨설팅감사 신청과 이송 등)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신청기관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하고,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신청하되, 감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부서의 장이 신청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전 컨설팅감사를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리하도록 이송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 ①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 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신청기관의 인·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인·허가등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 없이 제5조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인·허가등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해당 인·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 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4. 해당 인·허가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① 감사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통보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관련 조례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등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컨설팅감사 자문) ① 감사위원장은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때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 등이 사전 컨설팅감사의 자문에 응한 경우 자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① 신청기관의 장은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에 기속 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을 위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를 면제 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

신청기관(부 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2. 관련 법령, 자치법규

-
-

3.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주요쟁점,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배경 등)

-
-
-

4. 기타 (감사부서 의견, 관련 기관 의견 등)

-
-

※ 관련 증빙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 · 허가등 건명			
인 · 허가등 대상 사업 개요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의뢰 사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 구청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할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2. 주요내용(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사유 포함)

-
-

3. 기타 (감사부서 의견, 관련 기관 의견 등)

-
-

4. 검토 의견서

-
-

■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전 컨설팅감사 조치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신청기관 (부서명)	
건 명			

1. 사업 개요

-
-

2.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

-
-

3. 조치결과(이행여부 등)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 사유 기재

-
-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로의 직제변경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허가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전 컨설팅감사”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나.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함(제4조)
- 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감사원장에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라. 인·허가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마. 사전 컨설팅감사 심의회 규정을 삭제함